

의안번호	2205054
의 퇴 인	이종배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7.
추계번호	24A4735

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기술장벽 질의처(이하 “질의처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음(제1항) ○ 질의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2항) － 1. 국내기술규제의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통보 － 2.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문서의 접수 및 보급 － 3.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국내기술규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－ 4. 특정무역현안(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회의에서 무역기술장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한 안건을 말한다)에 대한 대응 － 5.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회의 참석 등 무역기술장벽 해소 대응 － 6.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－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2	안 제9조(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협정의 협상, 이행 및 운영의 점검 － 2. 우리나라와 체결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의 개발·채택 및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의 및 산업계 지원 － 3. 우리나라와 체결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 관련 정보교환 － 4. 우리나라와 체결상대국 간 적합성평가 결과의 인정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요청에 대한 협의 － 5.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항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, 단체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
3	안 제11조(무역영향분석 등)	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를 신설·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내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(이하 “무역영향분석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(제1항)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무역영향분석의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4	안 제12조(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의 수립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(국내기술규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위하여 3년마다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5	안 제13조(실태조사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현황, 수출기업의 애로사항,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6	안 제14조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·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, 기술규제의 성문표준 인용 정보 등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활용·관리하고, 통보문의 통보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규제·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(이하 “종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7	안 제15조(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·연구,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8	안 제16조(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·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7조(전문인력의 양성)	정부는 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1.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- 2.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·지원 - 3.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- 4.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교육의 지원 - 5.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	
10	안 제18조(국제 교류·협력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기구,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정보교환, 공동 조사·연구,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·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교육·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
11	안 제20조(전담기관의 지정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(제2항) - 1. 국내기술규제 개선·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 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- 2. 기술규제·무역기술장벽 현황 등의 자료 수집·조사·번역 및 분석 업무의 지원 - 3. 제7조제3항에 따른 검토 업무지원 - 4.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- 5. 제14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지원 - 6. 제16조에 따른 기술규제·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 등 지원 - 7.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- 8. 제18조에 따른 국제교류·협력 추진 및 개발도상국 지원 - 9.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						
1	안 제6조(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이 수행 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일부 추가재정소요(출장여비 등)가 발생할 수 있음 － 안 제6조 관련 현행 사업은 다음과 같음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소관</td><td>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</td><td>2024예산</td></tr> <tr> <td>산업통상 자원부</td><td>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WTO/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)</td><td>75백만원</td></tr> </table>	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4예산	산업통상 자원부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WTO/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)	75백만원
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4예산						
산업통상 자원부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WTO/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)	75백만원						
2	안 제9조(자유무역협정 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이 수행 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－ 안 제9조 관련 현행 사업은 다음과 같음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소관</td><td>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</td><td>2024예산</td></tr> <tr> <td>산업통상 자원부</td><td>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FTA TBT 종합지원)</td><td>1,414백만원</td></tr> </table>	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4예산	산업통상 자원부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FTA TBT 종합지원)	1,414백만원
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4예산						
산업통상 자원부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FTA TBT 종합지원)	1,414백만원						
3	안 제11조(무역영향분 석 등)	○ 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「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6조의2제3항제8호에 의거 시행되는 기술규제 영향평가에 무역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, 분석도구 확정 및 담당자 교육 등을 완료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						
4	안 제12조(국내기술규 제의 국제기준화 계획 의 수립 등)	○ 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－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, 예상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						
5	안 제13조(실태조사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이 수행 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						
		- 안 제13조 관련 현행 사업은 다음과 같음 <table><tr><td>소관</td><td>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</td><td>2024예산</td></tr><tr><td>산업통상 자원부</td><td>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및 대응지원)</td><td>6,039백만원</td></tr></table>	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4예산	산업통상 자원부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및 대응지원)	6,039백만원
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4예산						
산업통상 자원부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및 대응지원)	6,039백만원						
6	안 제14조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이 수행 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- 안 제14조 관련 현행 사업은 다음과 같음 <table><tr><td>소관</td><td>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</td><td>2024예산</td></tr><tr><td>산업통상 자원부</td><td>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FTA TBT 종합지원)</td><td>90백만원</td></tr></table>	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4예산	산업통상 자원부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FTA TBT 종합지원)	90백만원
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4예산						
산업통상 자원부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FTA TBT 종합지원)	90백만원						
7	안 제15조(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이 수행 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- 안 제15조 등 관련 현행 사업은 다음과 같음 <table><tr><td>소관</td><td>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</td><td>2024예산</td></tr><tr><td>산업통상 자원부</td><td>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및 대응지원)</td><td>6,039백만원</td></tr></table>	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2024예산	산업통상 자원부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및 대응지원)	6,039백만원
소관	현행 사업(세부사업 또는 내역)		2024예산					
산업통상 자원부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및 대응지원)		6,039백만원					
8	안 제16조(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)							
9	안 제17조(전문인력의 양성)							
10	안 제18조(국제 교류·협력 등)							
11	안 제20조(전담기관의 지정)							

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
 - 안 제12조(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의 수립 등)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- 다음으로,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이 수행 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

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

- 안 제6조(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), 안 제9조(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), 안 제13조(실태조사 등), 안 제14조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), 안 제15조(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), 안 제16조(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), 안 제17조(전문인력의 양성), 안 제18조(국제 교류·협력 등), 안 제20조(전담기관의 지정)의 경우 현재 관련 사업이 수행 중임
 - 다만, 제정안의 취지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이러한 재정소요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참고로, 제정안 관련 주요 현행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관련 규정	주요 사업	2024예산
안 제6조(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)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WTO/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)	75
안 제9조(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)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FTA TBT 종합지원)	1,414
안 제13조(실태조사 등), 안 제15조(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) 등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및 대응지원)	6,039
안 제14조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)	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(FTA TBT 종합지원)	90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